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4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9.

복지문화 위원회  
전문위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2025. 9. 18.
복지문화위원회

###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안
- 발 의 자: 이진환 의원 등 5명
- 발의일자: 2025. 9. 3.(수)
- 회부일자: 2025. 9. 3.(수)
- 검토기간: 2025. 9. 3.(수) ~ 9. 12.(금)

### 2. 제정이유

-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갱년기 증후군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갱년기 증후군을 겪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 규정(안 제4조~제5조)
- 라. 협력체계 구축(안 제6조)

## 4. 검토의견

- 이 제정조례안은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40~50대 주민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갱년기 증후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갱년기 증후군 관련 상담 및 서비스 제공,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등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의료기관·관련 단체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매년 40만 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이 갱년기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별 건강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갱년기 질환에 대한 조례 제정은 상위법령 위반여부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관계법령

## □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신체활동장려
4. 구강건강의 관리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6. 지역사회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 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보건의료기본법」

제31조(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生涯週期)별 건강상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한 평생국민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에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국민건강관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지도·보건교육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건강관리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